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녹색기술 규제샌드박스 신설 및 갈등조정 기능 강화〉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31호)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96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녹색기술 규제샌드박스 신설	4
2.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갈등 요소 심의 기능 신설	8

I. 제안경위

【의안번호 2206031호】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8.
3. 회부연월일 : 2024. 11. 29.

【의안번호 2206096호】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
3. 회부연월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2206031호】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0월까지 총 631건의 승인 실적 중 탄소중립 관련 건수는 189건으로 30% 정도의 녹색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였음.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실질적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 전기차, 수소 등 대표적인 녹색기술 등에 관한 승인과제의 규제부처는 대부분 산업통

상자원부로 되어있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위해 녹색기술 관련 과제에 관하여 더욱 적극적인 법령 정비의 촉진이 필요함.

녹색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녹색기술 관련 과제의 시장 출시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녹색기술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각적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자 함.

이에, 녹색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8 신설)

【의안번호 2206096호】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함)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두고 새로운 산업

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취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임에도, 비대면의료와 공유경제와 같은 첨예한 이해갈등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규제특례 신청 이후 승인까지의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늦어져 당초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 시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0조의3제6항제6호, 제10조의3제7항 각각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녹색기술 규제샌드박스 신설(의안번호 제2206031호)

개정안은 녹색기술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의 범위 및 대상을 규정하고, 녹색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 등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기업 등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8(녹색기술 신제품 ·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녹색기술 신제품 ·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녹색기술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하여 제10조의4제5항 또는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u>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령 정비 과정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u> <u>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u> <u>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기술 신제품 ·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하려는 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
--	---

현행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융합 성과를 통해 만들어진 경제·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음¹⁾.

1)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①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를 시험 ·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 · 기간 · 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태양광, 전기차, 수소 등 녹색기술의 관련된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서비스들도 기업의 신청에 의해 동법상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2024년 말 기준으로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실적 709건 중 탄소중립 관련 건수는 189건(30%)에 불과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²⁾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법령 정비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녹색기술³⁾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여 녹색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녹색기술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녹색기술 규제샌드박스를 별도로 마련하면 녹색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 건은 별도 접수·처리됨으로써 녹색기술에 대한 다각적인 실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녹색기술 관련 과제의 시장 출시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한국의 2030 NDC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임.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현행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일반법으로 특정 산업 또는 기술을 지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녹색기술에 대해서만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할 경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녹색기술 관련 신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심사·승인하고 있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발굴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므로 녹색기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국무조정실은 녹색기술과 2024년 1월에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순환경제 신기술의 범위⁴⁾가 일부 중복되어 신청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4)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갈등요소 심의 기능 신설(제2206096호)

개정안은 신제품·서비스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안 제8조의2제1항),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며(안 제8조의2제2항~제10항 신설),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7항).

또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규제특례 심의시 고려사항으로 ‘갈등의 존재 또는 갈등 유발가능성 여부’를 추가하고(안 제10조의3제6항제6호 신설),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갈등 또는 갈등 유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시 갈등조정위원회에 의뢰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7항 신설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갈등조정위원회는 사안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③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갈등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갈등 사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신 설>	④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⑥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⑦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갈등영향분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⑧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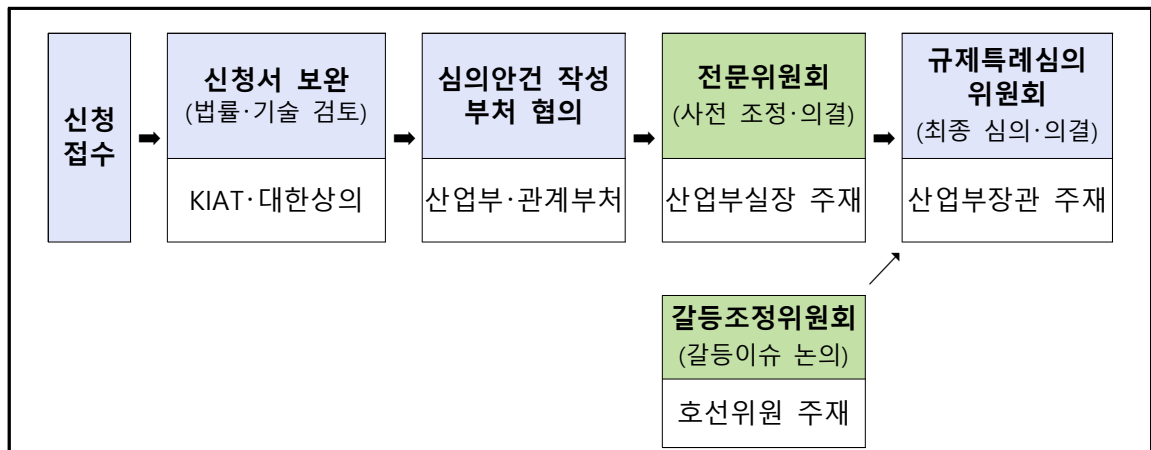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u><신 설></u>	<u>결과를 정리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⑨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시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갈등조정위원회는 해당 조건의 이행을 통하여 이해관계가 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u>
<u><신 설></u>	<u>⑩ 회의에 참석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⑪ ----- 운영 및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에-----</u>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⑤ (생략)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6. (생략) <u><신설></u>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u>안전성 등을 확보하기</u>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생략) ⑫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존재 또는 갈등의 유발 가능성 여부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⑦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제6항의 심의를 할 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갈등조정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⑧ -----안전성 확보,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을----- -----. ⑨ -----제8항----- -----. ⑩ -----제9항----- -----.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⑫ 제9항----- -----.

현행	개정안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⑬ (생략)	⑬ (현행과 같음)
⑭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 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제13항까지와----- ----- ----- -----.

현행 법률상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는 전문위원회⁵⁾의 사전 조정 또는 갈등조정위원회⁶⁾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 프로세스



5) 전문위원회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심의안건을 종합 검토·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1급(위원장), 규제부처, 신청기업 및 각 기관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함. 동 위원회는 법률 제8조에서 임의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건 상정에는 관계부처·기관 협의회가 필요하므로 운영상 유사·동일과제를 제외하고 반드시 개최하고 있음.

6) 갈등조정위원회는 신·구사업자 등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구성·협의되며, 관계부처, 갈등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위원이 구성됨.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함.

전문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는 필요시 구성되는 병렬적 관계이나, 전문위원회는 갈등조정 기능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갈등 수위가 낮은 사안은 전문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갈등조정위원회는 사안별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구에 불과하여⁷⁾ 현재까지 구성된 사례가 없고, 공유경제와 같은 이해갈등이 첨예한 분야의 규제특례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다 보니 심의기간이 장기화되어 신제품과 서비스가 적기에 출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⁸⁾

또한, 「산업융합 촉진법」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심의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갈등 요소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⁹⁾ 이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만한 갈등 해

7)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8)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갈등조정을 포함하여 사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으로 사전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ICT 융합, 혁신금융 등 여타 규제샌드박스도 갈등 조정만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함.

9)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기간·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결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심의프로세스의 단계별 갈등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보완·강화하고자 함.

우선, 갈등조정위원회 단계에서는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갈등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안 제8조의2제1항), 관련 전문기관에 갈등영향분석¹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8조의2제7항)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다음,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규제특례 심의 시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존재 또는 갈등의 유발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안 제10조의3제1항제6호), 갈등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를 갈등조정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안 제10조의3제7항),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8항).

6. 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10)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즉, 개정안은 갈등조정위원회가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와 갈등영향분석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규제특례 부여 시 갈등 해결 조건을 설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갈등이 첨예한 과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갈등 조정을 위한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가 규제법령 정비를 위해 제한된 조건(규모, 범위, 기간 등)에서 실증을 통해 갈등을 예견하고 갈등 조정 및 규제 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제도·정책 도입 단계가 아닌 시험·검증 단계에서의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등이 갈등영향분석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갈등영향분석 실시 및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심의기간 지연 및 규제특례 부여를 위축시켜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전문위원회가 갈등 여부를 포괄하여 특례 승인여부, 부과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ICT 융합, 혁신금융 등 여타 규제샌드박스에서도 갈등이 첨예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해결도 가능하므로¹¹⁾ 기존 제도를 통한 조정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한편, 동 법 시행령에 규정된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¹²⁾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갈등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전문위원회도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정보통신융합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여타

1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8(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또는 권고)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 특례의 부여, 규제 특례의 내용·조건 등의 변경 또는 규제 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등에 대하여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 의견이 달라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규제 특례 위원회에 해당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규제 특례 관련기관의 장과의 이견 조정에 관하여 규제 특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권고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2)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다만,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별로 위원장이 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이하 이 조에서 "갈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④ (생략)

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갈등과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⑧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 결과의 이행 및 정책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⑩ · ⑪ (생략)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에서도 전문위원회의 성격을 지닌 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³⁾

문 의 처
02)6788-5461

1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⑦ 전략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